중 국

[판례 분석]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의 저작권 침해 판단

2025. 9. 15.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으로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한 영상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무단 사용된 영상이 비록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AI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짐.

1. 현황

최근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창작물을 수정 또는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음. 그중 AI 딥페이크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원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로 바꾸는 기술로 이와 같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AI 딥페이크 영상이 마치 원본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재생되어 가짜 뉴스 생성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본문에서는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바꾸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해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시청각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알아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4)沪0114民初1326号	
관할 법원	1심	상하이시 쟈딩구 인민법원(上海市嘉定區人民法院)	
당사자	A 씨		1심: 원고

	B 회사	1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B 회사가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 씨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A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2. B 회사의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B 회사가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 씨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A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2. B 회사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7,500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權法) 제3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제12호,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著作權民事糾紛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제7조 ▪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侵害信息网絡傳播權民事糾紛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 제3조	
최종 판결일	2024년 4월 29일	

(1) 사건 개요

A 씨는 SNS 플랫폼에서 사진 및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X 계정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B 회사는 해당 플랫폼에서 Y 미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미니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고 광고를 시청하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사용자가 선택한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속 인물로 바꾸어주는 소위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 씨는 Y 미니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X 계정에 업로드한 고전풍 인물 단편 영상(이하 "사건 영상"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고 Y 미니프로그램 사용자가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바꾸었음을 확인함. 이에 A 씨는 Y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영상 속 인물 얼굴이 바뀐 영상(이하 "분쟁 영상"이라 함)은 인물 얼굴 특징 외에 장면, 카메라 구도, 스타일, 인물 동작 등이 고도로 일치하므로 이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Y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분쟁 영상이 자신의 사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B 회사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는 등 A 씨의 시정 조치 요구에 협조하였음. 이에 따라 A 씨는 B 회사에 대해 일정 정도의 용서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 영상 삭제 및 사과 요구 등 일부 소송 청구 사항을 철회하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B 회사가 Y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 영상을 분쟁 영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행위가 A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좁혀졌음.

(3) 법원의 판단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B 회사가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Y 미니프로그램 운영을 한 행위가 A 씨의 사건 영상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1) 사건 영상의 저작물 인정 여부

사건 영상은 고전풍 인물 사진 형식의 영상으로서 음성이 포함된 일련의 연속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영상의 내용 구성, 촬영 거리 선택, 촬영 각도 등에서 창작자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시청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A 씨는 실명 인증을 거친 플랫폼 계정을 통해 자신이 사건 영상의 촬영자임을 명시하였고 해당 영상의 원본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하였음. 따라서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A 씨를 사건 영상의 저작권자로 인정함.

2) 실질적 유사성 여부

분쟁 영상은 AI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사건 영상의 일부를 대체하여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여 제작되었음. B 회사는 사건 영상의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B 회사가 사건 영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은 단지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바꾸는데 그쳤을 뿐이며 그 외 영상의 핵심 표현과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음.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B 회사가 독창적인 표현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독창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분쟁 영상이 사건 영상의 일부 장면이 변경 및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영상은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함.

3) 저작권 침해 여부

분쟁 영상은 사건 영상의 구체적인 표현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고 있어 그 영상 자체가 사건 영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므로 분쟁 영상은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에서 B 회사의 행위가 사건 영상의 시장 가치 훼손을 야기했음. 첫째, B 회사는 AI 딥페이크 알고리즘을 탑재한 Y 미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미니프로그램에 사건 영상 그 자체를 게시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건 영상을 시청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둘째, B 회사는 Y 미니프로그램에 AI 딥페이크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해당 미니프로그램 사용자가 사건 영상 속 인물 얼굴을 바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와 같은 행위는 본질적으로 B 회사가 제공한 플랫폼·소재·기술을 통해 사건 영상을 언제든지 얼굴만 바꿔서 사용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임. 따라서 B 회사의 행위는 Y 미니프로그램의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상업적 판매 포인트로서 고객을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 회사가 A 씨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A 씨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이에 대해 B 회사는 사건 영상이 Y 미니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령 원본 영상이 사용자가 제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B 회사가 자사의 직원을 통해 해당 영상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Y 미니프로그램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면 B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현존하는 저작권 침해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B 회사가 Y 미니프로그램을 통하여 사건 영상을 제공하고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건 영상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A 씨의 사건 영상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함.

4) B 회사의 법적 책임

AI 알고리즘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생산력 및 디지털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장 경쟁 질서가 훼손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본 안건에서 B 회사의 행위는 A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B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함. 다만, B 회사는 디지털 경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민간 스타트 기업으로서 본 안 소송 후 법원의 사법적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A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A 씨로부터 일정한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B 회사의 법적 책임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A 씨는 현재 침해 중단 및 사죄에 대한 소송 청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용함.

한편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A 씨는 B 회사의 침해 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실이나 B 회사가 획득한 이익의 규모를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에 법원은 사건 영상의 유형, 창작성 정도, 시장 가치, B 회사의 사건 영상 사용 방식, 침해 행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배상액을 판단하여 변호사 선임 및 증거 보전을 위한 A 씨의 합리적 비용을 포함하여 총 7,500 위안을 배상금으로 결정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해당 영상을 수정하는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발생한 사례임. 본 사건에서 법원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변경한 영상의 독창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고,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음. 이에 아래에서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한 영상이 새로운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알아봄.

1) 딥페이크로 수정된 영상의 독창성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시청각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음. 2차적 저작물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구현된 독창성에 의거하여 새로운 독창성을 지닌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그 수정한 부분이 저작권법상 독창성 요건을 만족할 정도로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분쟁 영상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영상의 저작물 인정 여부를 판단한 후 사건 영상과 분쟁 영상의 실질적 동일성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음. 시청각 저작물은 무성 또는 음성이 포함된 일련의 연속된 장면으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그 독창성은 영상의 내용 구성, 촬영 거리·각도, 조명, 소품, 배경 등의 방면에서 제작자의 개성적인 선택과 배치가 구현되어야 함. 그러나 AI 딥페이크 기술로 수정된 영상의 경우,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원본 시청각 저작물 속 인물의 얼굴을 바꾸는데 그칠 뿐 그 외 영상의 핵심 표현과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AI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시청각 저작물 속 인물 영상을 무단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핵심 내용이 동일한 이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많지 않고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이를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한 경우 그 전송 방식이 일방향 전송이라면 방송권 침해가, 교호식 전송이라면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시청각 저작물 속 인물의 얼굴을 바꾸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음. 다만 이와 같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인터넷 플랫폼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이에 대해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음. 첫째는 B 회사가 AI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분쟁 영상이 Y 미니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할지라도 B 회사는 해당 영상에 대한 최소한의 저작권 침해 여부 심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건 영상 원본을 사용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물로 이를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상황을 방임한 것임. 둘째는 B 회사가 AI 딥페이크 기술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 사건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임.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AI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만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AI 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한층 더 엄격한 저작권 침해 심사를 거쳐야만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함.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AI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수정된 영상의 저작권법상 성격을 명확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용자에 의한 AI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 (2024)沪0114民初1326号